

1. 개정이유

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함으로써 법률구조 법인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최소화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법률구조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간소화

- 1) 임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증명서를 법률구조법인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서 제외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도록 함
- 2) 다만, 당사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. 11. ~ 1. 31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등록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등록신청) ① (생 략)	제2조(등록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<u>임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</u>	<u><삭 제></u>
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<u>다만, 등록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<u>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</u>